

저축
기능



• **금리하락시에도 최저보증이율로 안정**

보증기간	5년이하	5년~10년	10년초과
최저보증이율	1.25%	1.0%	0.5%

•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 비과세 해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

• **유연한 자금 활용 중도인출 가능!**

- 가입 6개월 후부터, 연12회,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90%이내

유의사항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각 중도인출금의 총 합계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의 적립금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므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감소
------	---

• **추가적립으로 복리효과 증대**

- 가입 6개월 후부터,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적립보험료의 합계액 + 중도인출 금액

유의사항	추가적립보험료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업비가 공제
------	---------------------------

• **보험료납입유예제도를 통한 고객편의 제공**

-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가능시점	보험계약일로 부터	5년납	7년납	10년납
		3년경과시	4년경과시	5년경과시

플랜별 담보별 유의사항

- 한번의 사고에 의한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100%(단, 비례보상 담보의 경우는 80%이상) 및 피보험자 사망시 이 계약은 소멸되며, 회사는 그때까지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적립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화재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화재벌금(실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주택내화재배상 제외)(실손),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실손), 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담보는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담보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내용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6-971호(2016.12.27)

■ **청약시 주의사항**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 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꼭 보관하십시오)

■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철회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는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충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

- 금융기관내려간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Tel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 **적용이율**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
- 적립부분 적용이율 - 저축성공시이율 1701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7억 7천만원 한도에서 1억원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 주택실속플랜 아파트, 화재손해1,000만원, 화재상 100㎡, 건물공수 1억, 월납10만원 5년납 10,500원기 단위 : 원)

경과년수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Mini(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200,000	1,099,820	91.7%	1,106,780	92.2%	1,106,780	92.2%
3년	3,600,000	3,409,140	94.7%	3,469,810	96.4%	3,469,810	96.4%
5년	6,000,000	5,776,320	96.3%	5,946,980	99.1%	5,946,980	99.1%
7년	6,000,000	5,888,550	98.1%	6,231,720	103.9%	6,231,720	103.9%
10년	6,000,000	6,060,920	101.0%	6,684,930	111.4%	6,684,930	111.4%

-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본인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상기 예산지환급금은 적립부분과 보장부분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적립부분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비용비로 차감한 금액)를 최저보증이율, 저축성공시이율(1701)(2.4% 적용예시), 평균공시이율(3.0% 적용예시)과 저축성공시이율(1701)(2.4% 적용예시) 중 적은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해지시에는 저축성공시이율(1701)을 적용하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관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적립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에 따른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 상기 예산 해지환급금이나 환급률은 향후 공시이율 변동, 계약내용 변경, 보험료납입유예, 보험료 상납일지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예산금액은 세전기준으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 상기 예산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사 **KEB 하나은행** | 보험사 **동부화재**

상담 및 문의전화 **고객상담센터 1688-0100** | **보상연수 1588-0100**
(지역번호없이) (지역번호없이)

www.idongbu.com

고객행복을 위한 동부화재의 약속 - **행복 약속 365** | 동부화재는 신속·친화·정확·특별·자유의 다섯 가지 약속을 통해 고객 한발 한발은 1년 365일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제작부서 : 방카지원파트 (2016.12), 관리번호 : P-2167-1612-0027

(무)프로미라이프
화재저축보험1701



보험사 **동부화재** | 판매사 **KEB 하나은행**

동 상품은 KEB 하나은행이 판매하는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화재저축보험"입니다.

화재
보장



- **화재손해 실손 보상**
- 주택 및 사업장 화재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장(공장물건 제외)
- **주택화재임시거주비 실손보상 (주택플랜, 주택실속플랜만 보장)**
- 최대 870만원 보장(3일초과 1일당 10만원 한도)
- 화재,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보상
- **주택건물복구비용 실손보장 (주택플랜만 보장)**
- 화재, 폭발·파열로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이발생시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

예시	주택건물(화재 복구비용지원(실손))	재조달가액	보험가액 (손해가 발생한 한 때와 곳의 가액)	보상금액
금액	2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원	2천만원
	1천만원	7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0원

※ 재조달가액 : 보험의 목적물을 동등한 것으로 취득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비용

- **화재에 대한 위험과 법률적 책임을 동시에 보장**
- 주택플랜, 주택실속플랜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대물 10억 / 대인 1억한도 보장
- 공장플랜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대물 3억 / 대인 1억한도 보장
- 화재벌금 :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주택실속플랜 제외)

2015년 화재발생 **44,435**건
연간 재산피해 **4천억**↑
(단위 : 백만/명, 2015년)

재산피해액	사망	부상
433,165	253	1,837

화재사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집 화재 대비는 화재저축보험으로 든든하게 지키세요!
자료출처 : 국민안전처-화재통계

가입안내

보험기간	6년, 7년, 10년, 12년, 15년만기
납입기간	5년, 7년, 10년, 12년납, 일시납 (전 보험 기간 전기납 없음)
납입주기	월납, 일시납
적용이율	적립부분 저축성 공시이율 1701 보장부분 연복리 2.5%
가입연령	피보험자기준 만 15세이상 (주택실속플랜 제외)

주택실속 플랜

우리집 안전과 목돈마련을 동시에!

만15세 이상

주택 플랜

우리집 안전과 목돈마련을 동시에!

만15세 이상

사업장 플랜

사업장의 위험과 사업자금을 동시에!

만15세 이상

공장 플랜

사업장의 위험과 사업자금을 동시에!

보장내용 주택실손

화재손해(실손보상)	화재, 폭발·파열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손해 발생시 (건물, 가재도구)	가입금액 한도
	화재, 폭발·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 발생시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실손)	화재, 폭발·파열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자기부담금 없음)	대물 10억원 한도 대인 1억원 한도
화상진단비	상해 화상 진단시 (1사고당)	10만원
주택화재임시거주비 (4일이상)(실손)	화재,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을시 (발생일로부터 90일 한도)	10만원 한도

※ 화재손해(실손보상) 가입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조정가능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대물 10억원 한도, 대인은 사망 최고 1억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한도임(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보험료 예시

(기준 : 아파트, 화재손해 1,000만원, 화재배상 100㎡, 건물공수 1급, 월납 단위 : 천원)

구분	5년납		7년납		10년납	
	납입보험료	민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민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민기환급률
6년만기	315	104.4%	-	-	-	-
7년만기	313	105.8%	-	-	-	-
10년만기	30	110.5%	139	109.0%	-	-
12년만기	30	115.7%	30	113.4%	348	111.6%

※ 상기 민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저축성공시이율 170(12.4% 적용)에사로 부리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공시이율변동, 계약·회용변경 중도인출, 보험료납입유예, 보험료 살납입일자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건물 구조별별 정리

구분	구조	지붕(틀)	기둥	외벽
1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내화구조
2급		불연재료	내화구조	내화구조
3급		불연재료	불연재료	불연재료
4급		상기 이외의 것		

- 내화구조
불에 강하고 불이 붙어도 모양의 변형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구조. 인접화재로 연소 우려가 적고 화재 시 내부가 탄 후에도 내력상 지장 없이 간단한 수리로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 (콘크리트, 벽돌, 석조 등)
- 불연재료
불에 타지는 않으나 일정온도 도달 시 모양 변형/붕괴되는 구조. (철강, 알루미늄, 유리, 모르타르 등)

보장내용 주택실손

화재손해(실손보상)	화재, 폭발·파열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손해 발생시 (건물, 가재도구)	가입금액 한도
	화재, 폭발·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 비용 발생시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화재벌급(실손)	형법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	2,000만원 한도
	형법 170조(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	1,500만원 한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실손)	화재, 폭발·파열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자기부담금 없음)	대물 10억원 한도 대인 1억원 한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주택내화재배상 제외)(실손)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자기부담금 대물 20만원)	1억원 한도
화상진단비	상해 화상 진단시 (1사고당)	10만원
주택화재임시거주비 (4일이상)(실손)	화재,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을시 (발생일로부터 90일 한도)	10만원 한도
주택건물(화재) 복구비용지원(실손)	화재, 폭발·파열로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이발생시	건물가입금액의 20% 한도

※ 화재손해(실손보상) 가입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조정가능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대물 10억원 한도, 대인은 사망 최고 1억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한도임(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보험료 예시

(기준 : 아파트, 화재손해 1,000만원, 주택내화재배상 제외(주택내실손) 200만원, 건물공수 1급, 월납 단위 : 천원)

구분	5년납		7년납		10년납	
	납입보험료	민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민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민기환급률
6년만기	348	104.4%	-	-	-	-
7년만기	340	105.8%	-	-	-	-
10년만기	76	110.3%	307	109.0%	-	-
12년만기	52	114.6%	75	113.2%	362	111.6%

※ 상기 민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저축성공시이율 170(12.4% 적용)에사로 부리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공시이율변동, 계약·회용변경 중도인출, 보험료납입유예, 보험료 살납입일자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FAQ

· 화재손해 실손보상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 발생한 경우 보상
(전용주택 및 전용주택내 수용가제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화재 실손손해 예시 ※ 화재손해(비례보상) 지급보험금 산정은 실손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적용

구분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실손손해액	지급보험금
화재손해(실손보상)	1억 2,5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화재손해(비례보상)	1억 2,5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500만원

보장내용 일반실손

화재손해(실손보상)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손해 발생시 (건물, 집기, 시설, 기계, 동산)	가입금액 한도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 발생시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화재벌급(실손)	형법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	2,000만원 한도
	형법 170조(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	1,500만원 한도
화상진단비	상해 화상 진단시 (1사고당)	10만원

※ 화재손해(실손보상) 가입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조정가능하며, 최대 가입금액은 동산 2억원 한도, 동산제외 10억원 한도임

보장내용 일반비례

화재손해(비례보상)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손해 발생시 (건물, 집기, 시설, 기계, 동산)	가입금액 한도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 발생시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화재벌급(실손)	형법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	2,000만원 한도
	형법 170조(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	1,500만원 한도
화상진단비	상해 화상 진단시 (1사고당)	10만원

※ 화재손해(비례보상) 가입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조정가능

보험료 예시

(기준 : 일반업무시설, 화재손해(실손보상) 1억원, 건물공수 1급, 월납 단위 : 천원)

구분	5년납		7년납		10년납	
	납입보험료	민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민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민기환급률
6년만기	623	104.4%	-	-	-	-
7년만기	567	105.8%	-	-	-	-
10년만기	360	110.3%	426	109.0%	-	-
12년만기	318	114.5%	350	113.2%	474	111.6%

※ 상기 민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저축성공시이율 170(12.4% 적용)에사로 부리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공시이율변동, 계약·회용변경 중도인출, 보험료납입유예, 보험료 살납입일자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화재벌급 실손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 보상
▶ 형법 제170조(실화)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 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실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공장비례

화재손해(비례보상)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손해 발생시 (건물, 집기, 시설, 기계, 동산)	가입금액 한도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 발생시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화재벌급(실손)	형법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	2,000만원 한도
	형법 170조(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	1,500만원 한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실손)	화재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자기부담금 없음)	대물 3억원 한도 대인 1억원 한도

※ 화재손해(비례보상) 가입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조정가능

※ 화재배상책임(실손) : 대물 3억원 한도, 대인은 사망 최고 1억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한도임(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보험료 예시

(기준 : 금속공장, 화재배상 100㎡, 화재손해 (건물/동산) 각 1억원, 건물공수 1급, 월납 단위 : 천원)

구분	5년납		7년납		10년납	
	납입보험료	민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민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민기환급률
6년만기	2,458	104.4%	-	-	-	-
7년만기	2,051	105.8%	-	-	-	-
10년만기	1,180	110.3%	1,233	109.0%	-	-
12년만기	1,075	114.5%	1,037	113.2%	1,234	111.6%

※ 상기 민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저축성공시이율 170(12.4% 적용)에사로 부리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공시이율변동, 계약·회용변경 중도인출, 보험료납입유예, 보험료 살납입일자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담보이해

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주가, 작업, 집회, 오락,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축조된 건축물

-부 속 물 : 칸막이, 대문, 담 등

-부 착 물 : 간판, 내문싸인, 안테나 등

-부속설비 : 전기, 통신, 가스, 냉·난방 등

집기비품 작업상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것 등

시설 건물의 골격, 벽, 바닥 등에 치장, 내·외부 마감재료 등 건물의 구조에 영향없이 재설치가 가능한 것 등

기계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장치(연소장치, 냉방장치)

동산 상품, 전산물, 반차제, 완제품 등

가재도구 일상생활에 쓰이는 가전 및 가구 등